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99

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최기상・임미애・복기왕

박은정 • 박희승 • 강경숙

백승아 · 김성화 · 김정호

정태호 • 이병진 • 정성호

박상혁 · 김남희 · 박 정

김동아 · 남인순 · 김영화

이수진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 상 독립기관(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)의 독립 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,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 · 대법원 · 헌법재

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지출의 원칙)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 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독립기관"이라 한 다)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에 대하여는 독립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월별 자금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기관의 자금계획에 대하여는 독립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월별 세부자금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9조의2(지출의 원칙) 정부는
	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
	등 국회 • 대법원 • 헌법재판소
	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
	"독립기관"이라 한다)의 재정
	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제30조(자금계획) ① (생 략)	제30조(자금계획) ① (현행과 같
	슬)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	
자금계획을 작성한다. <후단	<u>이 경우 기획</u>
<u>신설></u>	재정부장관은 독립기관의 자금
	계획에 대하여는 독립기관이
	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월별 자금
	계획서의 내용을 월별 자금계획
	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	4
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	
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	
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	
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	

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<u>한다</u>.

⑥·⑦ (생 략)

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
기관의 자금계획에 대하여는
독립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
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의 내용
을 월별 세부자금계획에 그대로
반영하여야 한다.
5
<u>하</u> 며,
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월별
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
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
이르 어어야 하다

⑥•⑦ (현행과 같음)